울산금형산업협동조합 장비관리운영지침

2018. 2. 1

울산금형산업협동조합

제정 2018. 2.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울산금형산업협동조합(이하 “울산금형조합”이라한다)에 구축된 장비의 효율적인 이용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는 제3조에 의하여 울산금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2. “장비이용“은 제9조에 해당하는 장비를 신청한 회원사 요청에 의해 직접 혹은 울산금형산업협동조합의 도움을 받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장 비 관 리

제3조(적용범위) 장비는 울산금형조합에 구축된 모든 장비를 대상으로 하며, 장비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한바에 따른다.

제4조(관리책임) 관리자는 장비구축과 이용기준을 마련하는 등 장비관리 및 이용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제5조((장비대여)

1. 회원사에서 장비를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비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자는 장비대여에 발생하는 제반비용을 부담하며, 장비이용료 등은 장비이용요율표(별표2)에 의하여 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3. 대여장비는 관리자 허가없이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명의를 게시할 수 없다.
4. 사용자는 대여장비의 분실 및 파손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한다.

5. 장비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해 장비이용보전금제를 시행하며, 장비이용보전금은 대(大), 소(小)로 구분한다. 다만, 장비이용보전금제로 인하여 소규모 영세한 회원사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6조(교정검사) 관리자는 장비관리대장에 기재된 장비는 검교정이 필요한 구성부품과 센서 및 장비에 대하여 교정검사를 필요 주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 3 장 장 비 이 용

제7조(적용범위) 이 지침으로 정하는 장비는 장비이용요율표(별표2)에 해당하는 장비를 대상으로 하며, 다른 법령이나 규정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이용자격) 울산금형조합 보유장비를 이용할수 있는자는 다음과 같다.

1. 울산금형조합에 가입한 회원사
2. 회원사가 아닌 일반 중소기업으로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장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3. 장비사용 자격

가. 해당 장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다

나. 관련장비에 대한 교육을 받거나 현장에서 장비를 취급하고 있는자

다. 기타 관리자가 사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이용시간) 장비 이용시간은 평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야간 및 휴일 포함하여 상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이용절차) 울산금형조합 장비를 이용코자 하는 경우 다음 각항에 따른다.

1. 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장비이용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 요구시 계약서 등 대체서식으로 가능하다.

2. 이용신청 장비에 대하여 장비이용료산출표(별표1)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3. 장비 이용신청자가 직접 운용을 하는 경우는 장비이용방법 또는 제반 규칙을 위반한 경우 이용을 중지 또는 취소 시킬 수 있다.
4. 관리자는 장비이용결과서를 작성하여 장비이용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적합성을 확인 받은후 장비이용료를 부과한다.

제11조(장비이용료)

1. 장비이용료는 장비이용요율표(별표2) 및 장비이용료산출기준(별표1)에 따른다.
2. 관리자는 기업체와 장기사용계약을 체결할수 있으며, 이 경우 장비사용료는 별도 계약서에 의한다. 단, 계약기간중 발생할수 있는 장비의 손망실,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모든 실은 해당업체가 책임을 진다.
3. 관리자는 물가변동 및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장비이용료를 조정할수 있다.
4. 회원사가 아닌 일반 중소기업은 장비이용료를 20% 추가 부담한다.
5. 장비이용료는 지정된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장비이용자의 의무) 울산금형조합 장비를 직접 이용하는 자는 효율적인 장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장비이용자는 안전사고 방지 및 장비보호를 위한 주의를 다해야 하며, 장비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 장비이용자는 사용을 마친후 이상유무를 확인 받아야 하며, 사용중 발생한 고장, 손상 및 사고 등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나 변상 등 모든 책임은 진다.
3. 장비이용자는 장비활용 사실을 명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준수) 장비이용 중 취득한 정보를 허락없이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장비처리) 중소벤처기업부의 장비폐기지침에 따라 실시하며 필요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용한다.

1. 외부전문가 포함 7명이내의 장비심의위원회에서 장비처리에 대해 심의한다(장비심의위원회는 필요시 구성·운영한다).
2. 1항의 심의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장비를 이관하며, 이관기관이 없는 장비는 매각 또는 폐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울산금형산업협동조합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2018. 2. 1부로 시행한다(총회의결에 따른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1>

장비이용료 산출기준

구 분	내 용
장비사용료 산정기준	1. 총 장비이용료 = 1일 장비이용료 + 관리비 2. 1일 장비이용료(8시간) 3. 관리비는 장비이용료의 10% 적용
1일 장비사용료 기본할인	1. 울산금형조합의 설립 취지를 반영하여 최소한의 이용료를 책정한다. 단, 장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할인율을 증감 할 수 있다. 2. 공동활용장비 구입시 조합부담금을 출자한 회원은 20% 할인하고, 장비이용보전금제를 통해 계약한 회원은 추가로 10%을 할인한다. 단, 장비이용보전금의 할인 적용은 보전금 소멸시 까지로 한다. 3. 울산소재 동종 비 회원에 대해서도 장비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조건이행 준수시 사용 가능토록 하며, 이용료는 20%를 추가 한다.
대여장비 사용료	1. 장비대여 중 이용료는 가동율 100% 사용조건으로 비용을 책정한다. 2. 특히, 장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증감 할 수 있다

<별표2>

장 비 이 용 요 율 표

(단위 : 원)

번호	장 비 명		1일 사용료	비 고
1	3차원 측정기	LEICA AT960(비접촉)	100,000	
2		Romer Arm RA7535SI(접촉)	50,000	
3		기 타(측정기)	50,000	
4	금형소재 DB 시스템	1회	500	
5	3차원 CAD 이용	1회	200	
6	스캔 공동 데이터	1회	300	

<별지 제1호서식>

장 비 관 리 대 장

순번	자산 번호	용도	등록 구분	장비 명	모델 및 형식	수량	납품 사명	구축 일자	보증 기간	투자 비	설치 장소	확인 (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별지 제2호서식>

장 비 일 상 점 검 표(년 월 일)

○ 장 비 명 :
○ 자산 NO :
○ 관리책임자 정 :
부 :

결재	담당자	과 장	상 무	이사장

○ 일상 점검내용

순서	항 목	점 검 방 법	기 준
1			
2			
3			
4			

○ 일자별 점검표(2018년 월) 범례 : 양호 ○ 이상 × 조치 ● 미점검 △

일자	점검내용	일자	점검내용	일자	점검내용	일자	점검내용
1		9		17		25	
2		10		18		26	
3		11		19		27	
4		12		20		28	
5		13		21		29	
6		14		22		30	
7		15		23		31	
8		16		24			

○ 문제점 발생 조치이력

발생일자	발생문제점	조치내용	조치자
※ 장비이상 발생시 : 보고순서 (발견자 → 관리자 → 이사장) 즉시 조치 취합			

<별지 제3호서식>

장비 고장조치 사항 보고

○ 작성일 :

<table>
<tr><td colspan="3" rowspan="2">돌발고장 / 예방 / 보전</td><td rowspan="2">결 재</td><td>담당자</td><td>과 장</td><td>관리자</td></tr>
<tr><td></td><td></td><td></td></tr>
<tr><td colspan="2">발생일자</td><td></td><td>소 속</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비가동시간</td><td></td><td>장비명</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발 견 자</td><td></td><td>조치자</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고장
내용</td><td>현
상</td><td></td><td colspan="4" rowspan="2"><사진></td></tr>
<tr><td>원
인</td><td></td></tr>
<tr><td colspan="2">조치내용</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특이사항</td><td colspan="5"></td></tr>
</table>

<별지 제4호서식>

장 비 반 출 확 인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연 락 처	
반 출 일			반입예정일		
반 출 자			반출자확인		
반출장비명	1. 자산번호 : 2. 자산번호 : 3. 자산번호 :				
울산금형산업협동조합 장비관리운영지침 제5조에 의거 상기 장비에 대하여 반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울산금형산업협동조합 (인)					

---------- 절취선 ----------

장 비 반 입 확 인 서

(일련번호 NO)

업 체 명		대 표 자		연 락 처	
반입장비명	1. 자산번호 : 2. 자산번호 : 3. 자산번호 :				
장비반입일	년 월 일				
장비상태확인			확인자 : (인)		
울산금형산업협동조합 장비관리운영지침 제5조에 의거 상기 장비에 대하여 반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울산금형산업협동조합 (인)					

<별지 제5호서식>

장 비 대여(이용) 신 청 서

1. 신청내역

신 청 NO		신 청 일	
장 비 명			
담 당 자	(인)	전화번호	
업 체 명		대 표 자	
신 청 자	(인)	연 락 처	
주 소			
업체구분	1. 회원사 2. 비회원사 3. 장비대여(이용) 계약자 4. 기타		
이용방법	1. 직접운용 2. 조합지원 3. 연구원 지원		
이용일자	년 월 일 ~ 년 월 일		
	예상 사용일자 : 총 (일)		
설치장소			
반납예정일	년 월 일		

2. 예상 이용내역

구 분	장 비 명	장비대여(이용) 내용	비 고
신청장비			
부속장비			
기타사항			

울산금형산업협동조합 장비관리운영지침 제 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여(이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울산금형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장 비 대 여(이용)료 산 출 표

1. 작 업 명 :
2. 신 청 자 :
3. 사용일자 :
4. ( ) 장비대여(이용)료 산출내역

울산금형산업협동조합
TEL 286-0529, FAX 286-0528

(단위 : 원)

장 비 명	비 용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작업명>	장비사용료		
	관 리 비		
	인 건 비		
	기 타		
	소 계		
<작업명>	장비사용료		
	관 리 비		
	인 건 비		
	기 타		
	소 계		
	합 계		

※ 장비사용료 입금안내
1. 입금은행 : 기업은행
2. 계좌번호 : 601-021153-04-013
3. 예 금 주 : 울산금형산업협동조합
4. 입금문의 : 052-286-0529

년 월 일

울산금형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인)

<별지 제7호서식>

장비이용 결과 보고서

결재	담당자	상근이사	이사장

발 생 NO			신 청 NO	
장 비 명				
이용내역				
담 당 자			연 락 처	
의뢰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의 뢰 인		연 락 처	
장비이용 결과				
장비이용료				
장비이용 적합성 확인	장비이용자 : (인)			

울산금형산업협동조합 장비운영관리지침 제12조에 의거 위와 같이 장비이용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울산금형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별지 제8호서식>

장비이용보전금제 이행 계약서

울산금형산업협동조합 장비이용지침 제5조에 의하여 장비의 감가삼각비는 물론 손망실에 대비한 자금을 사전에 예치하여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비이용보전금제를 시행하며, 규모가 영세한 회원사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갑" 과 "을"이 계약을 체결한다.

1. 장비이용 범위 : 울산금형조합에 구축된 3차원 스캐너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 2018. 1. 19 ~ 2028. 1. 18(10년간)
3. 계약금액(보전금) : 금 원(₩ 원)
4. 계약구분
   가. 장비이용보전금은 대(大), 소(小)로 구분 한다.
      ① 대(大) 40,000,000원 이상 납입하며, 장비이용료 10%를 할인한다.
      ② 소(小) 7,000,000원 이상 납입하며, 장비이용료 10%를 할인한다.
5. 계약조건
   가. 장비이용보전금제를 계약한 회원사는 장비관리이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장비이용보전금은 계약기간 만료시 소진된 것으로 본다.
   다.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며, 특수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제 규정이나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라. 규모가 영세 회원사에서 장비를 이용코자 할시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6. 준수사항
   가. 장비보전금제를 시행한 취지는 장비의 감가상각비는 물론 돌발 손망실에 대비한 사전 준비금으로 장비사용시 전문가에 의해 절제된 작업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부주의 등으로 장비 손망실이 발생한 경우 계통라인을 통해 신속히 당 조합에 보고 하여야 한다.
   다. 장비의 반입·반출시 당 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장비의 이상유무는 사용할 회원사에서 사전에 확인하여 책임관계를 명확히 한다.

년 월 일

"갑" : 울산금형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인)
"을" : 회사명 : 대표자 : (인)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나눠 가진다.